

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

① (필수)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처리 유의사항 확인

본인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.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,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자 또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.

-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에 대해 오지급 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.

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② (필수) 부정수급 금지사항 동의 및 제출서류 확인 동의

본인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약약합니다.

- 본인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 서류는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- 만약, 위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,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환수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거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③ (필수)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부정청구 시 반납동의

본인은 지원받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, 부정청구 금액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
2. 신청정보 오류, 신청 시 신청자의 과실 등 기타 그 밖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잘못 수령한 경우

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④ (필수)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중복수급,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중복수급·오지급 시 반납동의

본인은 지원받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, 지급받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.

1.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중복하여 지급된 경우
2.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중복지급 또는 오지급된 경우

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동의를 거부할 경우,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.

상기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

2022년 월 일

동의 및 확인자

(서명 또는 인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